

2022년도 부산항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현황, 주요 위반 및 사고 사례 공유



깨끗하고 안전한 부산항! 생동감 넘치는 부산항!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이 현 욱 주무관

CONTENTS

- 1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현황
- 2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주요 위반 사례
- 3 위험물 컨테이너 누출 및 과태료 부과 사례
- 4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주요 Q&A



Part 1.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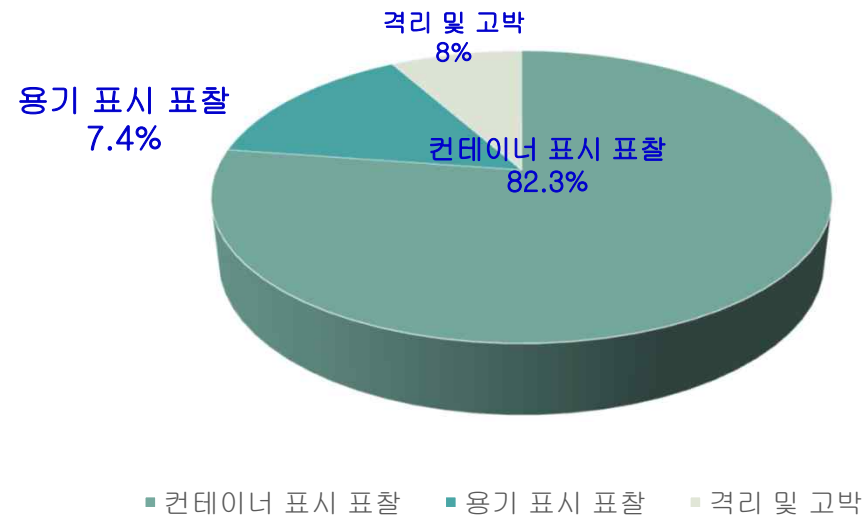


1. 2022년도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현황(~2022.11.)

구분		합계	부산청	인천청	여수청	울산청	평택청	포항청
수입	점검목표 (TEU)	6,701	5,100	560	560	315	150	16
	이행실적 (TEU)	5,654	4,329	472	444	269	140	0
수출	점검목표 (TEU)	299	165	48	48	22	12	4
	이행실적 (TEU)	204	119	48	0	25	12	0
총 이행실적 (TEU)		5,858	4,448	520	444	294	152	0
비율(%)		83.6%	75.9%	8.8%	7.5%	5.0%	2.6%	0%

* 기준일 : '22.11.18

2 2022년도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현황(실적)



구분	'21년			'22년 11월			전년 대비 증감		
	점검TEU	위반TEU	위반율	점검TEU	위반TEU	위반율	점검TEU	위반TEU	위반율
부산청	6,384	243	3.8	4,448	256	5.7	-	-	1.9

* 기준일 : '22.11.18

Part 2.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주요 위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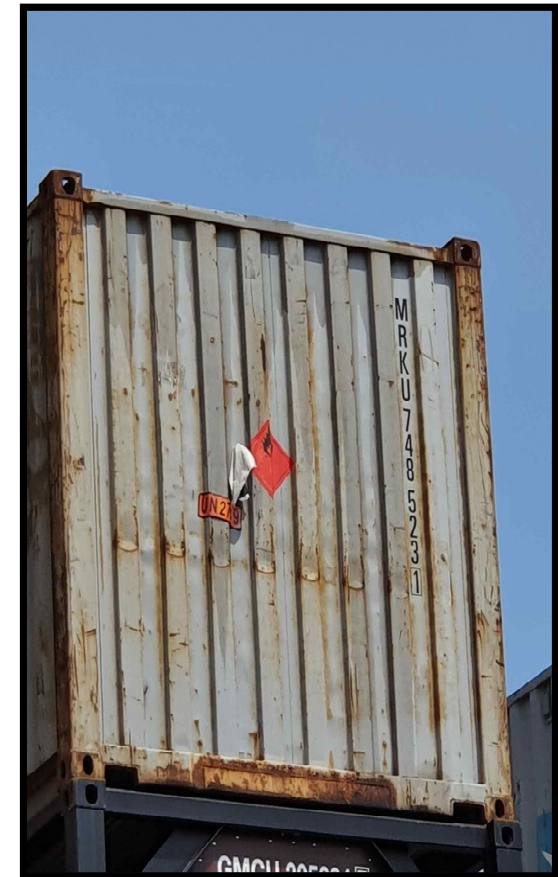
1 개방점검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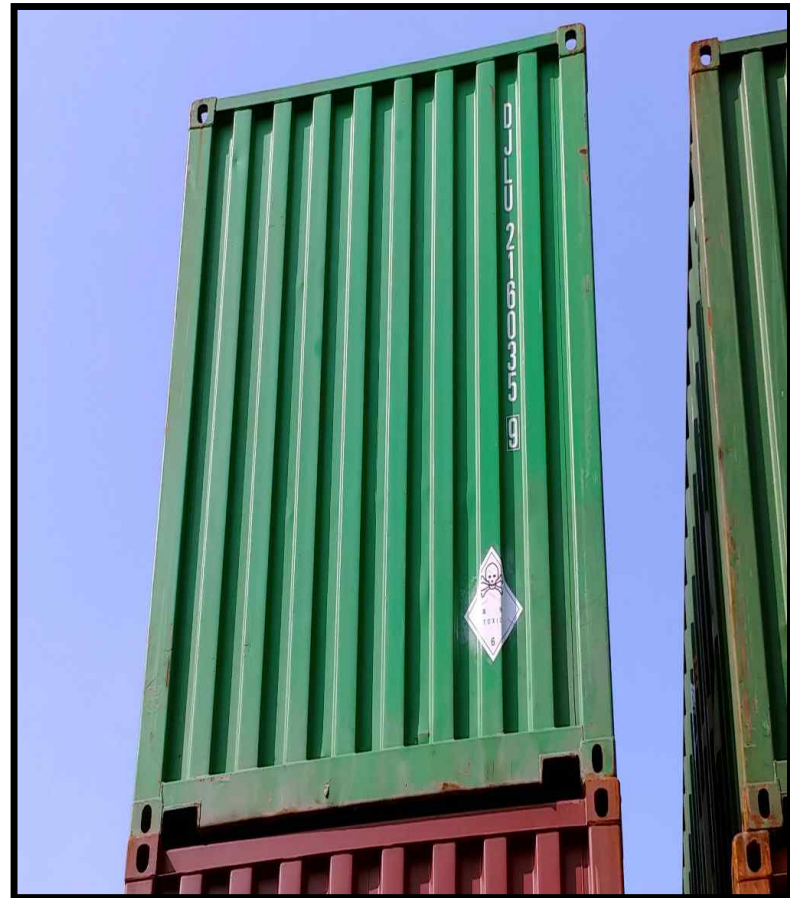
2. 개방점검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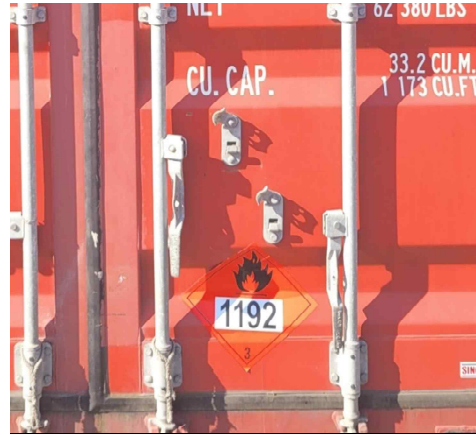
3. 외관점검 부적합 사례



4. 외관점검 부적합 사례



5. 외관점검 부적합 사례



구성	색상
바탕	흰색
위치	표찰 내부
글자 색상	흑색



구성	색상
바탕	주황색
테두리	흑색
글자 색상	흑색

부적합 예시

적합 예시

6. 외관점검 부적합 사례



7. 외관점검 부적합 사례



부적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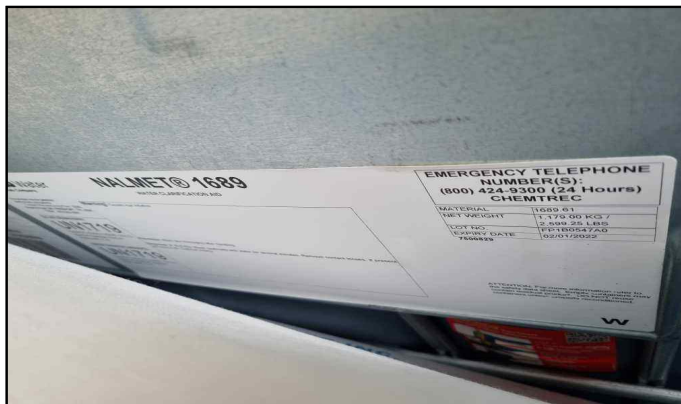


적합 예시

8. 개방점검 부적합 사례



9. 개방점검 부적합 사례



10 개방점검 부적합 사례



10 개방점검 부적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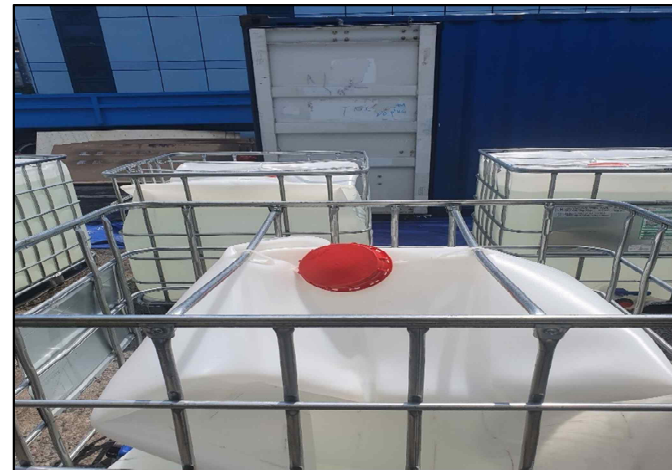
Part 3.

위험물 컨테이너 관련 사고 사례



II. 점검요령 및 주요 사례

3. 컨테이너 누출 및 과태료 부과 사례



Part 4.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주요 Q&A



IV. 위험물컨테이너 주요 Q&A

Q1.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점검대상

항만으로 반입되는 **수입 · 수출 위험물컨테이너(환적포함)**

■ 근거 법령

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제412호)

제213조(위험물컨테이너 등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하여 이 규칙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지 점검할 수 있다.

나.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45호)

제2조(점검대상) 이 요령에 의한 점검대상은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이하 “위험물컨테이너등” 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점검계획 수립 · 시행 등) ③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점검일시에 운송인이 입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IV. 위험물 컨테이너 주요 Q&A

Q2. 위반통지서 조치 요령

■ 위반통지서를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반출 전 시정조치 또는 위반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미 화물이 반출된 경우,
사유서 제출로 대체

■ 근거 법령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45호)

제 11조(점검 후 조치) ③ 위반통지서를 받은 **운송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때, 위반통지서를 받은 운송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에 그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지방청장에게 제출 해야한다.

IV. 위험물 컨테이너 주요 Q&A

I Q2. 위반통지서 조치 요령

■ 위반사항이 과태료 건이 아닌 경우, 화물을 반출해도 되나요?

■ 운송인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후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화물을 강제적으로 반출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구. 소방법)에 따른 위반이 적용됩니다.

IV. 위험물 컨테이너 주요 Q&A

Q3. 과태료

■ 과태료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근거 법령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45호)

제 11조(점검 후 조치) ④ 제2항에 따른 운송인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선박 안에 컨테이너 위험물명세서 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유엔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한 경우
3. 용기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내용물이 유출되는 경우
4. 컨테이너 내부의 위험물이 이동, 전도 또는 파손된 경우

IV. 위험물컨테이너 주요 Q&A

Q4. 표찰 관련 부적합이 무슨 의미인가요?

■ 관련 규정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부록1]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5.2.2.2.2항

■ 표찰양식 부적합

- 위험물 등급에 따른 표찰 배경색상 규정에 어긋남



구분	특징
바탕	7개의 붉은색 세로줄무늬가 있는 흰색
심벌	검은 불꽃
숫자	하부 모서리 4

IV. 위험물컨테이너 주요 Q&A

Q4. 표찰 관련 부적합이 무슨 의미인가요?

■ 표찰양식 부적합

- Placard partly detached



- Placard partly damaged



IV. 위험물컨테이너 주요 Q&A

참고 위험물의 분류

<p>제1급 : Class 1</p> <p>화약류 (Explosives)</p> 	<p>제2급 : Class 2</p> <p>가스류 (Ga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급(class 2.1) : 인화성 가스(flammable gases) ▶ 제2.2급(class 2.2) : 비인화성, 비독성가스(non-flammable, non-toxic gases) ▶ 제2.3급(class 2.3) : 독성가스(toxic gases) 	<p>제3급 : Class 3</p> <p>인화성액체 (Flammable liquids)</p> 
<p>제4급 : Class 4</p> <p>가연성물질류 (Flammable Solids; Substances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 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1급(class 4.1) : 가연성 고체, 자기반응성물질, 고체 둔감화 화약류, 중합성물질 (Flammable solids, Self-reactive substances, Solid desensitized explosives and Polymerizing substances) ▶ 제4.2급(class 4.2) : 자발발화성물질 (Substances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 ▶ 제4.3급(class 4.3) : 물과 접촉하여 인화성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 		
<p>제5급 : Class 5</p> <p>산화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Oxidizing substances and Organic peroxid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1급(class 5.1) : 산화성물질(oxidizing substances) ▶ 제5.2급(class 5.2) : 유기과산화물(organic peroxides) 	<p>제6급 : Class 6</p> <p>독성물질 및 전염성물질 (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1급(class 6.1) : 독성물질(toxic substances) ▶ 제6.2급(class 6.2) : 전염성물질(infectious substances) 	
<p>제7급 : Class 7</p> <p>방사성물질 (Radioactive material)</p> 	<p>제8급 : Class 8</p> <p>부식성물질 (Corrosive substances)</p> 	<p>제9급 : Class 9</p> <p>기타 위험 물질 및 제품 (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 and articles)</p> 

IV. 위험물 컨테이너 주요 Q&A

Q5. PSN 부착 관련 부적합은 무엇인가요??

■ 점검 대상

위험물이 충전된 **탱크 화물운송기구** 또는 위험물이 수납된 **산적 컨테이너**

■ 관련 법령

가. IMDG CODE

5.3.2.01 화물운송기구의 최소한 **양측면**에 내용물의 **정식 운송품명**(PSN, PROPER SHIPPING NAME)을 내구성이 있도록 표시해야한다.

나. IMDG 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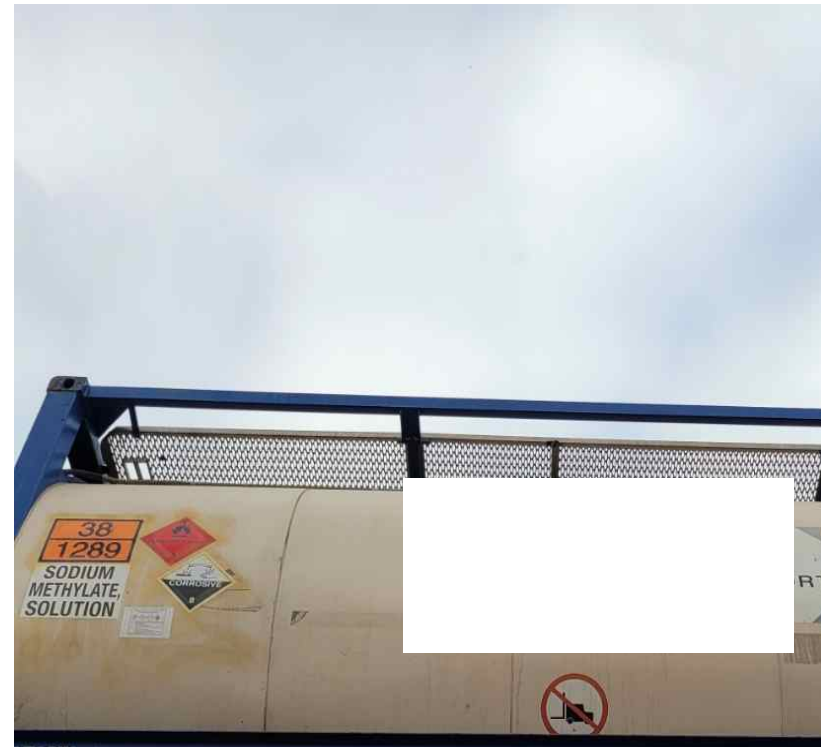
5.3.2.0.2 PSN은 높이가 **65mm 이상인 문자**로 표시, 바탕색과 대조되는 색깔로 표시해야한다. 용량이 3,000 L 이하인 이동식 컨테이너의 경우 정식운송품명의 높이는 12mm까지 축소 할 수있다.

IV. 위험물컨테이너 주요 Q&A

Q5. 자주 식별되는 PSN관련 부적합 사례



PSN관련 부적합



적합 예시

IV. 위험물 컨테이너 주요 Q&A

Q6. 용기 내 표시 및 PSN 미부착은 무엇인가요?

■ 점검 대상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

■ 관련 법령

가. IMDG CODE

제1.1장 제3규칙

1. 유해물질이 수납된 포장화물에는 해당 물질이 IMDG Code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물질이라는 것이 나타나도록 항구적으로 표시하거나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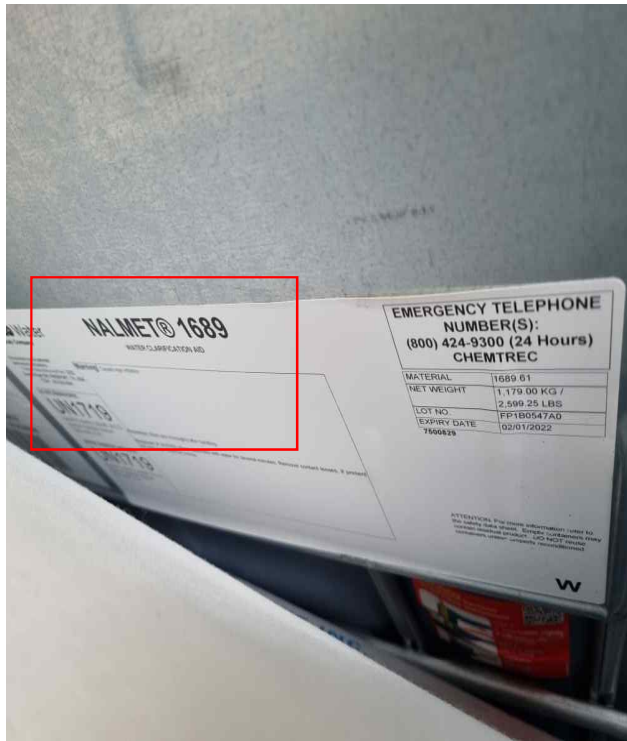
2. 유해물질이 수납된 포장화물에 표시 또는 표찰을 부착하는 방법은 IMDG CODE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IMDG CODE 5.2.1.1 포장화물{증형산적용시(IBC)포함} 표시

IMDG CODE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포장화물에는 제3.1.2절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은 **위험물의 정식운송품명(PSN)**을 표시해야하며 이것에 해당하는 유엔번호도 문자 **“UN”** 뒤에 표시하여야 한다.

IV. 위험물컨테이너 주요 Q&A

Q7. 수납용기의 PSN관련 부적합 사례



부적합 예시



적합 예시

IV. 위험물 컨테이너 주요 Q&A

Q8. 수납용기 수납(고박)상태 부적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점검 대상 위험물을 수납한 화물운송기구

■ 관련 법령

가.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1조 (위험물의 수납방법)

- ②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할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이동, 전도(轉倒), 충격, 마찰, 압력손상, 누출** 등으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해당 위험물의 어느 부분도 외부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수납한 후에 컨테이너의 문을 닫아야 한다.
- ③ 위험물을 컨테이너의 **일부에만** 수납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컨테이너의 문과 가까운 곳에** 수납하여야 한다.

나. IMDG CODE

7.3.3.6 위험물이 수납된 포장화물 및 비포장 위험물 제품은 포장화물 자세의 변경 또는 포장화물의 손상 원인이되는 **운송 중의 이동이 방지**되는 방법으로 화물운송기구 **내부에 화물이 구속**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예, 결속 끈(fastening strap), 슬라이딩 슬랫보드(sliding slatboard), 조정할 수 있는 받침대(adjustable bracket)으로 고박하여야 한다. (중략)

7.3.3.10 위험물 위탁화물이 화물운송기구 **수납화물의 일부분밖에**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비상 사고 시 또는 설비 점검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표시 및 표찰이 보이도록 **문(door)근처에** 수납하여야 한다.

IV. 위험물컨테이너 주요 Q&A

Q8. 수납용기의 수납 상태 부적합 사례



부적합 예시



적합 예시

IV. 위험물컨테이너 주요 Q&A

Q8.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규정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제412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94호)

[선박안전법]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45호)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한 점검항목·방법, 점검 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V. 위험물컨테이너 주요 Q&A

Q9.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사항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한국해사위험물 검사원(www.komdi.or.kr)

정보광장

- 위험성 정보 및 대응
- 위험물 운송요건
- 위험물해상운송 법령구조
- 위험물 표시/표찰
- 국제기구조식
- 운송규정 최신동향
- 국가위험물 정보 시스템

위험성 정보 및 대응

위험물 관련 정보(시각 자료 포함)
손쉽게 확인 가능

구분

"2016유해물질 비상대응 핸드북(ERG Guidebook)파일 다운로드"
※ 이 파일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http://nics.me.go.kr>) → 알림소식 → 간행물에서 공개된 자료이며 최신판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번	UN NO	등급	부위험성	포장등급(PG)	비상조치사항(EmS)		정식운송품명(PSN)	특성 및 주의사항
1	0004	1.1D			F-B	S-Y	AMMONIUM PICRATE dry or wetted with l...	보기
2	0005	1.1F			F-B	S-X	CARTRIDGES FOR WEAPONS with burstin...	보기
3	0006	1.1E			F-B	S-X	CARTRIDGES FOR WEAPONS with burstin...	보기
4	0007	1.2F			F-B	S-X	CARTRIDGES FOR WEAPONS with burstin...	보기
5	0009	1.2G			F-B	S-X	AMMUNITION, INCENDIARY with or witho...	보기
6	0010	1.3G			F-B	S-X	AMMUNITION, INCENDIARY with or witho...	보기
7	0012	1.4S			F-B	S-X	CARTRIDGES FOR WEAPONS, INERT PR...	보기
8	0014	1.4S			F-B	S-X	CARTRIDGES FOR WEAPONS, BLANK or...	보기
9	0015	1.2G	특별규정 2...		F-B	S-X	AMMUNITION, SMOKE with or without bu...	보기
1...	0016	1.3G	특별규정 2...		F-B	S-X	AMMUNITION, SMOKE with or without bu...	보기

< 1 / 285 page(s) > 2,848 count(s)

감사합니다